

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

2023년도

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



인천광역시 서구
공동체협치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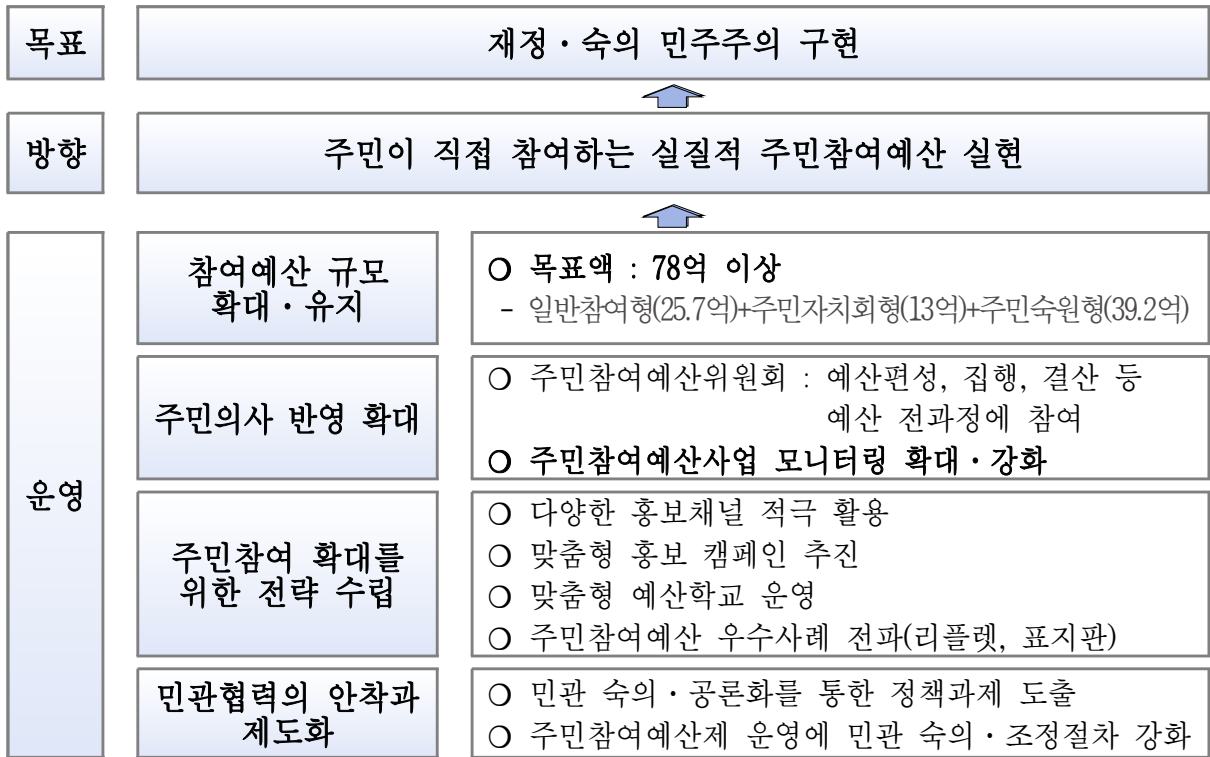
업 무 요 지

제 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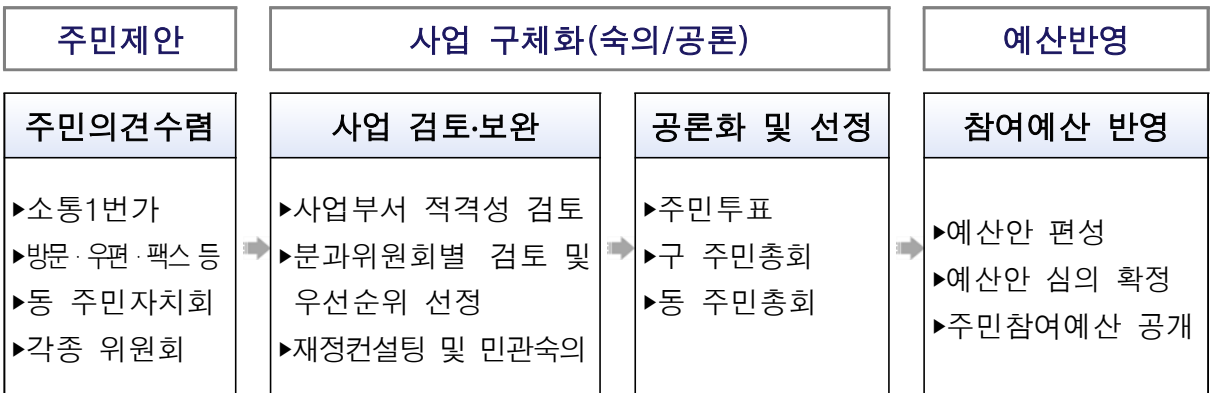
-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-
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◆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추진하고
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추진목표



운영절차



순서

I. 추진개요	1
II. 2022년 운영성과 및 2023년 추진과제		
1. 2022년 운영성과	2
2. 2023년 추진과제	4
III. 2023년 운영개요	5
IV. 2023년 추진일정		
1. 구(區)분야	7
2. 동(洞)분야	8
V. 세부 추진계획		
1.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	10
2. 참여예산학교 운영	15
3.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	18
4. 예산편성 외 주민참여	25
5. 홍보계획	28
VI. 행정사항	29
[붙임 1] 신청서식		
[서식1] 사업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	31
[서식2] 주민제안사업 검토서	33
[서식3] 주민제안사업 심사평가표	35
[서식4]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	36
[서식5]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	39
[서식6] 우선순위 결정서. 목록	41
[서식7]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서식	43
[서식8]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	45
[참고 1]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	46

-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-
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-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확대하여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

I. 추진개요

1.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-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2. 추진목적

- 예산편성, 집행,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 주요사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 촉진
- 동 주민자치회의 선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 실현
-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 및 전문성 있는 감리 등을 통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

Ⅱ. 2022년 운영성과 및 2023년 추진과제

1. 2022년 운영성과

2022 운영성과 개요



□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

○ 2021년 25.1억 → 2022년 72억 186% ↑

(단위:천원)

구분	2021년도		2022년도	
	사업수	사업비	사업수	사업비
일반참여형	55	2,490,270	92	3,532,849
주민숙원형	7	18,170	6	2,600,000
주민자치회형	-	-	120	1,068,971
총계	62	2,508,440	218	7,201,418

○ 본격적인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추진(1개동 → 22개동) 및 주민숙원형 사업 추진으로 약 2배에 달하는 참여예산 추진 달성

□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수립(2023년 집행)

○ 21년 72억(22년 예산) → 22년 78억(23년 예산) 8.2% ↑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1년도		2022년도	
	사업수	사 업 비	사업수	사 업 비
일반참여형	92	3,532,849	38	2,569,750
주민숙원형	6	2,600,000	10	3,920,400
주민자치회형	120	1,068,971	121	1,304,360
총 계	218	7,201,418	169	7,794,510

○ 각 동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민숙원형 사업 발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(8%)

□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

○ 2021년 23,696명 → 2022년 25,086명 5.86% ↑

구 분	2021년도	2021년도
	인원 수	인원 수
관련 위원 수 (주민자치포함)	919	847
교육 참여자	1,190	957
사업 제안자	307	326
숙의과정 참여자	1,270	1,026
주민투표 수	20,010	21,930
총 계	23,696	25,086

※ 참여자수 산정 기준 : 2022행정안전부 평가항목 (참여자 수 평가 기준)

○ 주민투표자 수가 전년대비 1천900여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주민 참여예산 참여자 수 소폭 증가

2. 2023년 추진과제

주민의사 반영 확대

-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 운영 방안 모색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강화 : 예산편성, 집행,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 및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통한 평가·환류 강화
- 2024년도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

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 강화

- 동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실링제(동별 30,000천원)를 통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
- 동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회의 시 퍼실리테이터 지원,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

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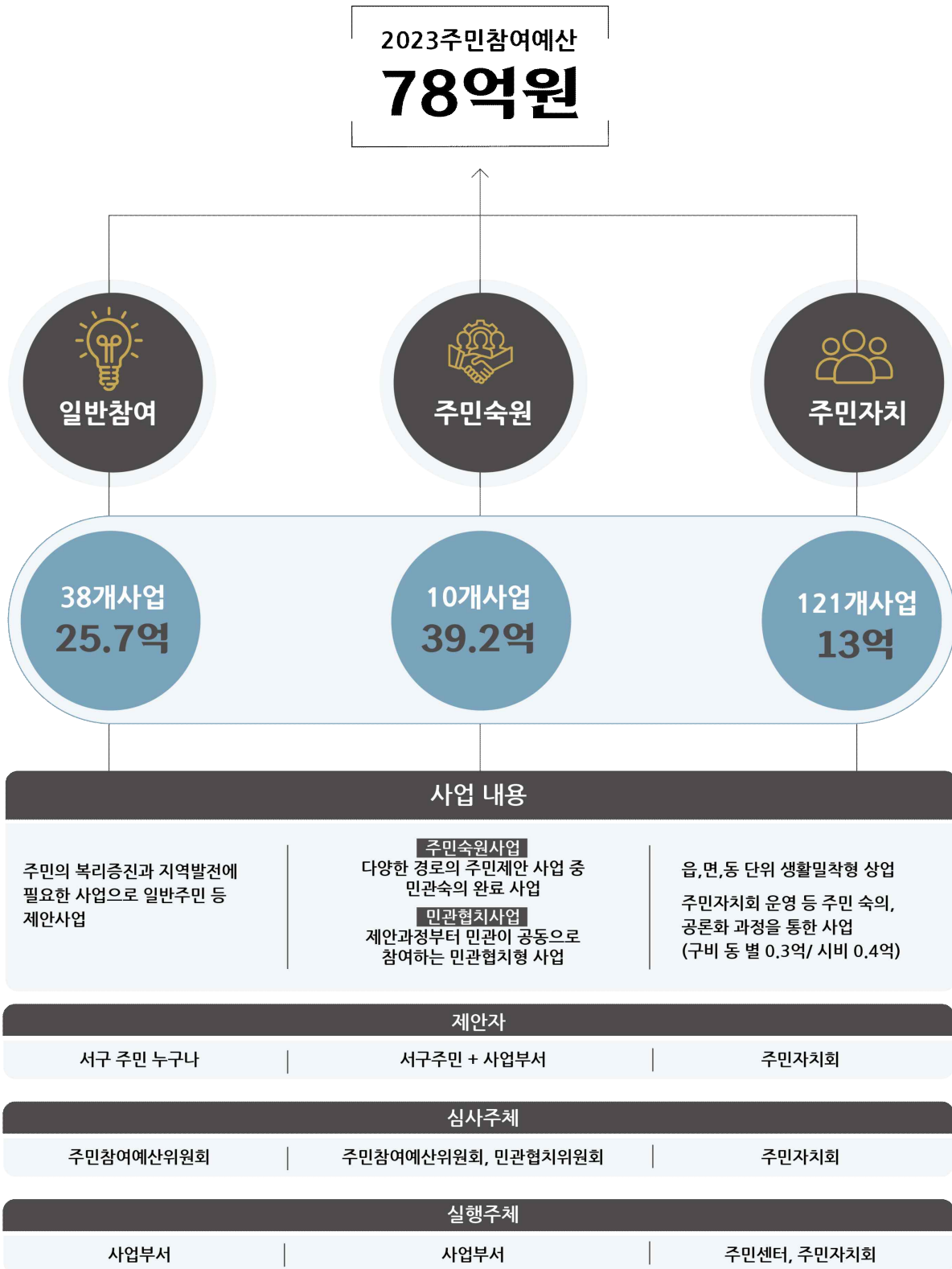
- 다양한 홍보채널 적극 활용(소통1번가, 전광판, SNS, 홍보물)
-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홍보 강화
- 맞춤형 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주민 접근성 향상
-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 확대
-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리플렛 제작 배포
- 주민참여예산사업 표지판 설치를 통한 관심과 참여 유도

민관 협력의 안착과 제도화

- 민관 숙의·공론화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
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민관 숙의·조정 절차 강화

Ⅲ. 2023년도 운영개요

□ 개 요



□ 운영절차

단계		①제안	②검토,숙의	③심사	④선정	⑤반영
구분						
일반 참여형 (지속 사업 포함)	주체	일반주민 동 주민자치회, 서구 각종 위원회	사업부서, 분과위원회, 제안자, 동 주민자치회	주민참여 예산위원회	민관협의회	사업부서
	역할	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제출	사업의 적정성 검토	우선순위 결정 및 반영사항 심의	총괄 심의·조정 및 확정	예산(안) 확정 및 의회 제출
주민 숙원형	주체	사업부서, 민관협치위원회	사업부서, 민관협치위원 회	민관협치위원 회	민관협의회	사업부서
	역할	숙의완료된 사업 제안, 민관숙의를 통한 의제 발굴	사업의 적정성 검토	우선순위 결정 및 반영사항 심의	총괄 심의·조정 및 확정	예산(안) 확정 및 의회 제출
주민자 치회형	주체	동 주민자치회	동 주민자치회, 사업부서	동 주민자치회	민관협의회	동 주민자치회
	역할	예산편성 관련 마을의제 발굴	사업의 적정성 검토	동 주민 총회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	총괄 심의·조정 및 확정	예산(안) 확정 및 의회 제출

IV. 2023년도 추진일정

1. 구(區) 분야

구분	추진사항	시기	주요내용
계획수립	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	1월	▶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15일 이상 공고
예산학교	예산학교 운영	3월	▶ 기본교육 : 대상 - 서구 주민 누구나 ▶ 심화교육 및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 : 대상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▶ 아동, 청소년, 청년 교육 : 관련 위원회 위원
주민제안	주민참여 제안사업 신청·접수	상시	▶ 방문, 팩스, 우편접수 ▶ 소통1번가 홈페이지 참여
		3~5월 (집중)	▶ 어린이·청소년·청년 참여위원회 등 의견수렴 ▶ 민원요청사업(주민숙원사업) 접수 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발굴 ▶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 등
사업검토	사업검토 및 보완, 유사사업 통폐합 등	6월	▶ 사업부서 : 제안자 의견 청취 후 관련법령, 사업타당성, 적격성 등 검토, 사업 구체화하여 사업검토서 작성, 유사사업 통폐합 의견제시
사업심의	분과위원회 활동 (민관숙의·조정)	4월	▶ 1차 모니터링 :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실행계획서 모니터링 ⇒ 모니터링단 선정
		7월	▶ 1차 심의(일반참여형, 민관숙의완료형) : 사업부서 담당자 참석, 검토서 질의·답변 ▶ 현장방문 : 현장방문 사업 선정 및 방문
		7월	▶ 재정권설팅 : 예산팀
		8월 초	▶ 사업부서 : 1차 심의 질의사항 포함, 조정된 예산액 포함하여 보완된 사업검토서 제출 ▶ 2차 심의 : 현장방문자료 포함 검토 및 의견교류
		8월 말	▶ 3차 심의 : 제안사업 평가표 작성, 우선순위 선정
		9월	▶ 2차 모니터링 :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, 현장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
		12월	▶ 현장모니터링 및 3차 모니터링 :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모니터링 및 3차 모니터링

구분	추진사항	시기	주요내용
주민의견수렴	온라인 및 현장투표	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온라인 주민투표(모바일, 소통1번가 참여) ▶ 현장 주민투표(각동 주민센터 투표소 마련)
	주민총회 개최	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민제안사업 사례 발표 및 공개논의의 장 운영 ▶ 2023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우선순위 선정 ▶ 2023년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
	주민의견수렴	10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: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
사업선정	예산조정	10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예산반영금액 확정 : 사업부서+예산팀
	민관협의회 최종 선정	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을 조정·반영하여 예산반영여부 최종 결정 ▶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(사업부서예산)
예산편성	예산편성	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종 사업설명서 작성 및 e호조 입력
	예산안 제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4년 예산안 서구의회 제출
	예산심의 확정	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의회 상임위,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확정

※ 추진일정(구정분야, 동정분야)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동(洞) 분야

구분	추진사항	시기	주요내용
자치사업실행	보조금신청서, 실행계획서 제출	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3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▶ 구비 보조금 교부 ※시비 교부 : '23.2월 예정
	사업실행	1월~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3년 자치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실행
주민자치회역량강화	주민참여예산교육	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기본교육)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, 기초 ▶ (심화교육)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교육 ▶ (실행교육) 자치사업 실행 교육 ⇒ 동별 실시
		6월~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실무교육) 2024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컨설팅

구분	추진사항	시기	주요내용
주민의견 수령 및 검토심의	주민의견 수렴 (제안사업 공모)	상시	▶ (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, 팩스, 우편접수
		3~5월 (집중)	▶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발굴 - 주민자치회 직접 사업 의제 발굴 - 민원요청사업(주민숙원사업) 접수 - 동 행정복지센터 제안접수 창구 운영
	주민자치회 분과별 활동	6~7월	▶ 제안사업 분류 - 사업성격 및 추진주체에 따라 주민자치회형, 동센터형, 사업부서형 분류 ▶ (주민자치회) 1차 사업제안서 작성
	민관숙의 · 조정	7~8월	▶ (1차 검토) 사업부서 : 관련법령, 사업타당성, 적격성 등 검토 ▶ (민관숙의) 사업제안서 컨설팅 : 주민자치회, 공동체협치과, 사업부서 의견교류 ▶ (기획예산담당관) 재정컨설팅 : 예산적정성 검토
	사업제안서 작성	9월	▶ 숙의·조정 결과 반영 2차 사업제안서 작성
사업 선정	동 주민총회 개최	10월	▶ 주민투표(온라인, 현장투표) ▶ 2024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 (사업비 기준 120%범위 내)
	민관협의회 최종 선정	11월	▶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을 조정·반영하여 예산반영여부 최종 결정 ▶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

※ 예산편성절차는 구정분야와 동일

V. 세부 추진계획

1.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

□ 위원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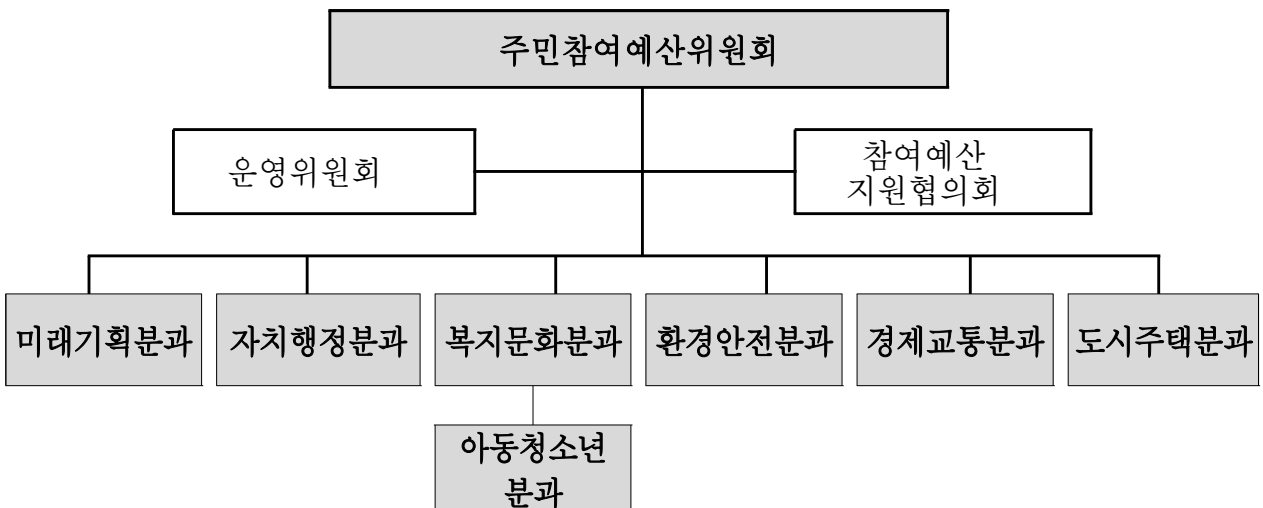
구분	동 주민자치회	주민참여 예산위원회	지원협의회	민관협의회	운영위원회
위원수	847명 (23개동)	모집예정 (공모60%, 추천40%)	7명 (전문가)	18명	8명 (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원)
임기	2년 (1회 연임가능)	2년 (2회 연임가능)	2년 (1회 연임가능)	-	2년 (2회 연임가능)
주요 기능	의제발굴, 우선순위 심의 등	주민 제안사업 반영여부, 우선순위 심의 등	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	주민 제안사업 총괄 심의· 조정 및 확정	주민참여예 산제 운영, 주요결정사항 통합·조정

1-1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

□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



- 모집기간 : 2023년 1월 ~2월
- 모집인원 : 110여명 내외 (분과별 16명 내외)
- 임 기 : 2년 (2회한 연임가능)
- 임원구성 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
- **주요기능**
 - 중기지방재정계획, 투·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
 -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
 -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,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
 -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
 -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
 -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
 -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
 -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**분과위원회 운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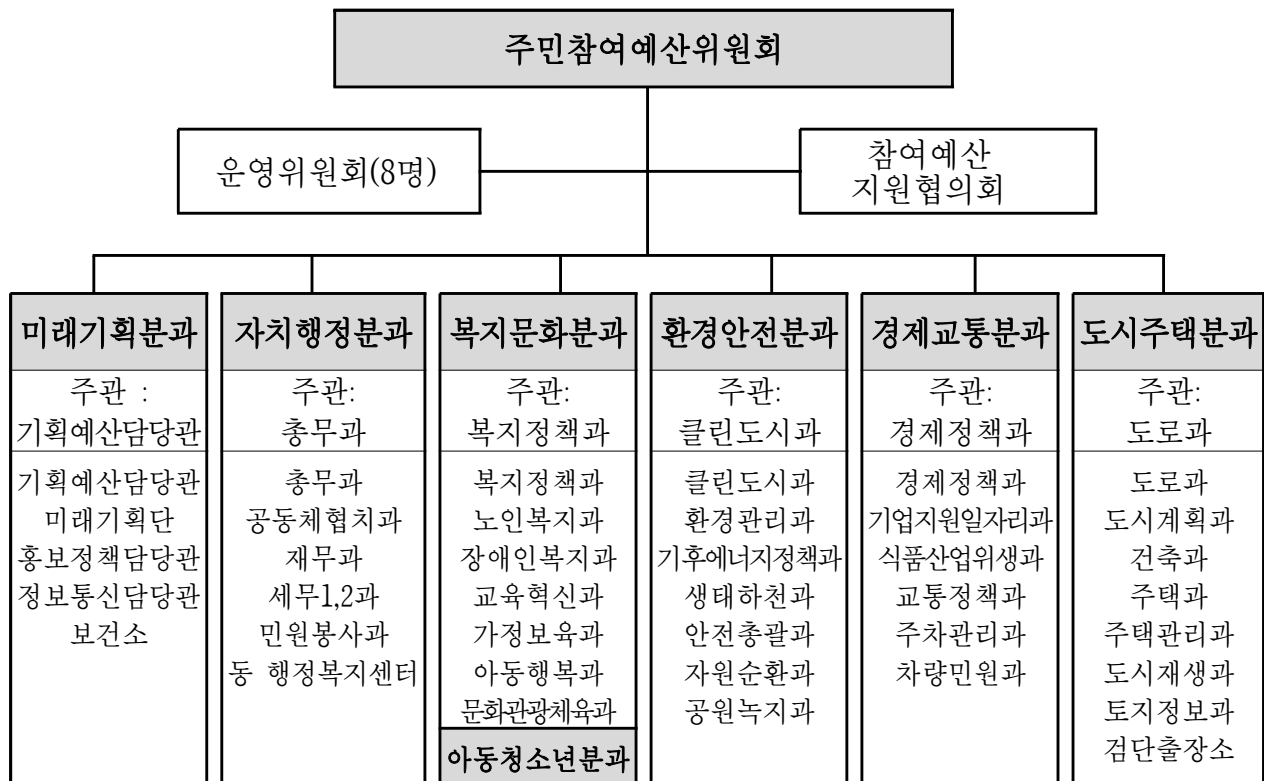
- 분과구성 : 7개
- 위원수 : 분과위원회별 16명 내외
- 임원구성 : 분과위원장 1명, 간사 1명 (*분과별 주요부서 주무담당)
- 회의운영
 - 회의개최 : 운영일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
 - 회의개의 및 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 - 회의방법 :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 원칙 *혼합방식 지양
- ※ 소관분과의 제안사업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사업 심사 시 제척
- **주요기능**
 -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
 - 부서별 주요사업(2억이상) 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

-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
-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등

○ **주관부서 지원내용**

- 회의자료 준비 및 진행, 위원·의견제출자·사업부서 담당자 참석 연락, 회의결과 정리 등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 지원
-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·제출

○ **분과구성도**



□ **운영위원회 운영**

- 위원수 : 8명 내외
- 구성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, 분과위원장
- 임원구성 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
- 회의운영
 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
- 주요기능 :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협의·조정

-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(분과위원회)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분과위원회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
1-2 참여예산 민관협의회

- 운영시기 : 2023. 11월
- 위원수 : 총 18명
- 임원구성
 - 구청장, 부구청장, 각 국장, 미래기획실장, 보건소장,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
 - 공동위원장 2명(*구청장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), 부위원장 1명(*위원 중 호선), 간사 1명(*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)
- 주요기능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 심의
 -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,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심의·조정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어린이·청소년·청년 참여위원회, 주민자치회 등을 거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
 -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

1-3 참여예산 지원협의회

- 위원수 : 10명 이내
 - 예산관련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시민단체 관계자 등
- 임 기 : 2년 (1회한, 연임 가능)
 - 제2기 지원협의회 임기('21.3.1. ~ '23.2.28.)

- 임원구성
 - 회장 1명, 부회장 1명 (*협의회 위원 중 호선)
 - 간사 1명 (*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)
- 회의개최
 -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
 -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주요기능
 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
 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
 - 그 밖에 지원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
1-4

동 주민자치회

□ 개 요

- 관련근거 : 인천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- 구성인원 : 847명 (23개동, 동별 50명 이내)
- 임기 : 2년 (1회 연임가능)
- 주요기능
 -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동네 생활불편 해소 사업,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, 소규모 안전시설물 설치사업, 마을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제안사업 상시 발굴, 사업제안서 작성
 - 동 자치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숙의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
 - 동별 주민총회를 통한 제안사업 우선순위 투표
 - 2023년(2022년 발굴)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실행

2. 참여예산학교 운영

※ 2023년 참여예산학교 상세운영계획 별도 수립



2-1 기본교육

운영목적

- 일반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 위주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,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의 참가를 이끌어 냄

운영시기 : 2023. 3.

운영방법 : Zoom을 통한 비대면 통한 교육
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 변경 가능

대 상

-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
- 관내 영업소,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·단체의 대표, 임직원

교육내용

-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이해와 사례
- 2023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, 주민 제안 방법

2-2

심화교육

운영목적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,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

운영시기 : 2023. 3.

운영방법 : Zoom을 통한 비대면 통한 교육

-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 변경 가능

대 상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
- 동 주민자치회 위원

교육내용

- 의제 발굴, 제안서 작성 방법
- 주민제안사업 심의방법,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방법
- 성인지 교육

2-3

수준별 예산학교

운영목적

- 예산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참여민주주의 구현
-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역량 증진 및 참여기회 확대

운영시기 : 2023. 연중

운영방법 : Zoom을 통한 비대면 통한 교육

-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 변경 가능

교육내용

- 어린이참여위원회, 아동청소년분과, 청년위원회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

2-4 **찾아가는 예산학교**

운영목적

- 다양한 계층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이끌어 냄

운영시기 : 2023. 연중

운영방법 : 행사 형태에 따라 대면 / 비대면 교육 선택 실시

교육내용

-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이해와 사례
- 2023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, 주민 제안 방법

2-5 **사업 담당자 교육**

운영목적

-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자들에게 역할과 태도 실무적인 처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

운영시기 : 2023년 하반기

운영방법 : 집합교육

교육내용

- 참여예산의 필요성과 제도이해
- 참여예산 사업 검토 방법 및 노하우 등 실무자 교육

3.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

사업선정 절차 개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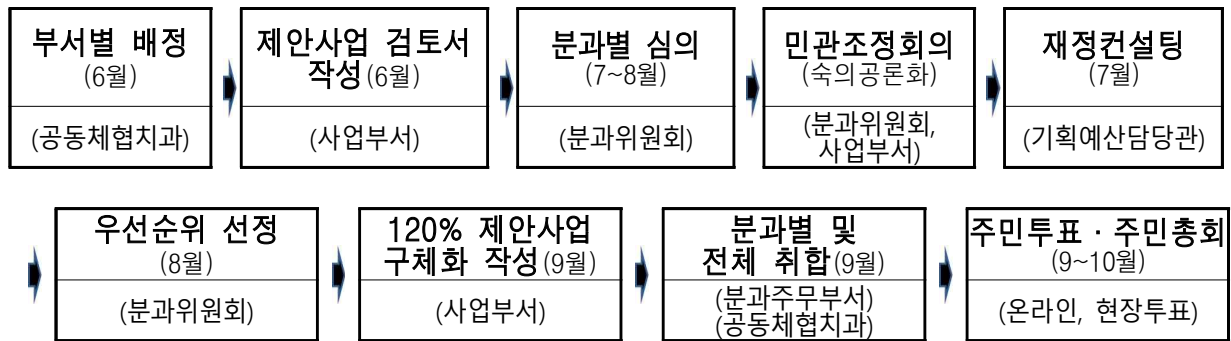
3-1 제안사업 공모

- 신청기간 : 2023.3.1. ~ 5.31. (*2024회계년도 본예산 사업 대상)
 - 상시 제안 가능하며, 위 기간 이후의 접수 건은 차년도 예산에 포함
- 참여방법
 - (온라인) 소통1번가 주민참여예산에 의견 등록
 - 소통1번가 인천광역시 서구 (<https://www.seo.incheon.kr/>) 접속
 - 주민참여예산 ⇒ 사업제안 ⇒ 주민제안 사업신청
 - (오프라인) 행정기관 방문·우편·팩스를 통한 주민 의견 제안
 - 제출처 :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체협치과 ☎ 032)560-3022,3024 (우 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(팩스) 032-560-2782
 - (주민자치회형) 동 행정복지센터, 주민자치회를 통한 의견 전달
 -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제안 접수 창구 마련

3-2 제안사업 분류 및 부서검토

- 기간 : 2023. 6. (*2024회계년도 본예산 사업 대상)
- 제안사업 분류 *사업성격 및 추진 주체에 따라 분류
 - 일반참여형 사업 : 공동체협치과 → 부서별 배정
 - 사업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(자본적 성격)
 - 예) 공공시설물 등 설치·보수, 환경개선사업
 - 주민자치회형 : 동 행정복지센터, 주민자치회가 직접수행하여야 하는 사업(경상적 성격)
 - 예) 축제, 교육, 행사, 캠페인
 - 2개이상 부서 해당사업 : 주관부서, 협조부서 지정 후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 등 검토내용 취합, 작성 제출

처리절차



부서검토서 작성방법

- 법령, 조례, 사업 타당성, 유사사업 통폐합 등 검토
- 제안자의 취지 및 제안사업 구체화,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안 의도 정확히 파악
-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참여예산사업으로 부적정한 경우, 제안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 모색 등 수정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(불가 시 근거, 대안제시 등)

-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 등 면밀한 검토
 - 건설사업(도로, 교통, 녹지 등)의 경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
 - ※ 제안내용이 기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을 개선 또는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참여예산사업으로 분류·검토
- 참여예산사업으로 적정 여부 파악

참여예산 부적정 사업

-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
-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및 계속사업
- 타기관 소관에 해당하는 사업
- 투자효과가 공익보다 일부지역/단체/개인에 국한되는 사업
-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- 동 또는 자생단체 주관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축제·행사
-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

3-3 제안사업 심사·선정

일반참여형 사업, 주민숙원사업

- 심사주체 :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
- 사업대상
 - 일반참여형 : 다양한 경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
 - 주민숙원사업
 - 다양한 경로(민원발생,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, 각종 위원회·토론회·공청회 등)의 주민제안 사업 중 부서검토 및 숙의가 완료된 사업
- 심사시기 : 2023. 7~8월

○ 운영주관

구분	해당부서	주무부서(간사)
미래기획분과	실·단·담당관, 보건소	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
자치행정분과	자치행정국	총무과(총무담당)
복지문화분과	복지문화국	복지정책과(복지정책담당)
환경안전분과	환경안전국	클린도시과(환경정책담당)
경제교통분과	경제교통국	경제정책과(경제정책담당)
도시주택분과	도시주택국	도로과(건설행정담당)

○ 관련근거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제1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.

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○ 주무부서 역할

- ※ 분과위원회 운영(사업심사, 심의회의, 모니터링, 공청회 등) 적극 협조
- 사업제안서, 사업부서 검토의견, 분과위원 심의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배제사업 선정
- 구 총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
- 주민참여예산사업 분기별 관리카드 취합·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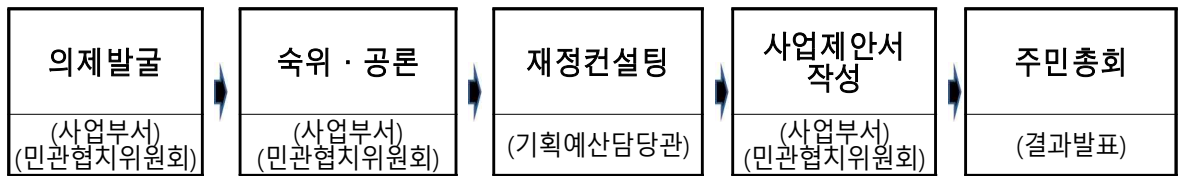
○ 간사 역할

- 회의자료 준비 및 진행, 위원·의견제출자·사업부서 담당자 참석 연락
- 회의결과 정리, 회의결과 관련부서 전달 등 분과위원회 회의 전반 지원

○ 최종선정 :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순 우선순위 선정 및 위원 협의를 통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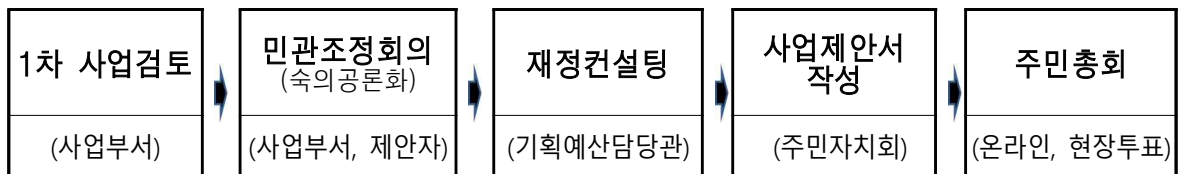
□ **민관협치형 사업**

- 운영·심사 주체 : 서구 민관협치위원회
- 심사시기 : 2023. 7~8월
- 사업대상 : 사업제안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제 발굴,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업
- 역할 : 숙의·공론을 통한 민관협치사업 발굴, 사업구체화
- 추진절차



□ **주민자치회형 사업**

- 심사·운영 주체 : 동 주민자치회
- 심사시기 : 2023. 8월
- 역할 : 동 주민총회에 상정할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
- 추진절차



3-4

참여예산 재정컨설팅

- 목 적 :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전에 예산편성 적격 여부 컨설팅
- 기 간 : 2023. 7월 중
- 대 상 :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외 제안사업
- 방 법 :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적격 여부 검토(기획예산담당관)

3-5

(사전)주민투표

- 투표대상 : 구 총회에 상정되는 2024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(안)
- 기 간 : 2023. 9월 중
- 투표방법 : 온라인투표(모바일,PC활용), 현장투표(투표소 설치)
- 장 소 : 온라인, 서구청, 동 행정복지센터
- 투표 대상자 : 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서구 주민
- 주민투표 결과 :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결과 합산 집계하여 최종사업 선정 및 주민총회 시 결과 보고

3-6

주민총회

구 주민총회

- 시 기 : 2023. 10월 중
- 장 소 : 미정
- 참석대상 : 서구 주민
- 사업범위 : 일반참여형, 민관협치형(민관숙의완료형,민관협치형)
- 운영주관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
- 주요내용
 - 분과위원회별 주민제안사업 설명회 : 프리젠테이션 진행 등
 - 주민투표 결과(사전투표+현장투표) 집계하여 개표 결과 총회 보고
 - 사전투표점수(온라인,현장),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선정
 - 2023년 區 주민참여예산 실행 우수사례 공유

동 주민총회

- 시 기 : 2023. 9~10월 중
- 장 소 : 동별 자율 선정
- 참석대상 : 해당 동 주민
- 사업범위 : 주민자치회형 사업

- 운영주관 : 동 주민자치회
- 주요내용
 -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동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 - 2023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
 - 동 분과위원회별 주민제안사업 설명회 : 프리젠테이션 진행 등
 - 2024년 洞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
 - 주민투표 결과 집계하여 개표결과 총회 보고
 - 사전투표점수, 현장 투표인단, 주민자치회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선정

3-7

최종 선정

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

- 운영시기 : 2023. 11월
- 위원수 : 18명
- 임 기 : 2년 (1회한, 연임 가능)
- 임원구성
 - 구청장, 부구청장, 미래기획실장, 각 국장, 보건소장,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
 -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 (*협의회 위원 중 호선)
 - 간사 1명 (*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)
- 주요기능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심의
 -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등 예산 관련 사항 심의·조정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어린이·청소년참여위원회, 주민자치회 등을 거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
 -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

4. 예산편성 외 주민참여

4-1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단 운영

- 추진목적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예산편성과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추진과정, 최종 마무리까지 기능 강화
- 대상분야 : 2023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
- 모니터링단 : 분과위원회, 공동체협치과(총괄)
- 추진시기 : 상·하반기 3회, 상시 모니터링
 - 주민참여예산 실행계획서 검토 1차 모니터링(모니터링단 선정) : 4월
 -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2차 모니터링, 현장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: 9월
 - 현장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: 상시
 -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3차 모니터링 및 현장 모니터링 : 12월
- 추진방법
 - 사업부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별 사업계획서, 추진경과, 민원사항 등 정보 공유
 -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: 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, 하자 발생 여부, 지역주민 만족도, 사후관리상태, 예산낭비, 기타 의견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
- 결과조치
 - 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, 해당부서는 조치 결과를 주민참여예산담당자 및 분과 위원회에 통보
 -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모니터링 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
 - 소통1번가 주민참여예산란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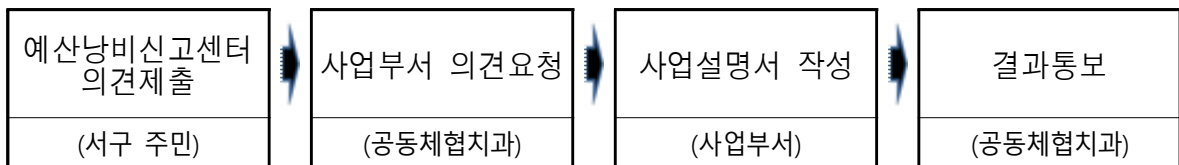
-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24년 운영계획 및 사업 선정 시 반영

□ 주민참여예산 제안자 감리제

- 추진목적 : 제안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내용대로 진행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제안자가 직접 감리를 하여 사업 완성도 증대
- 대상사업 :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
- 주요내용
 - 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작성 시 감리제 희망여부 제출
 - 사업부서에서 제안사업 시행 시 제안자 사전 안내,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진행 과정, 결과 공유

□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

- 목 적 : 구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감시활동 활성화
- 대상사업 : 2023년도 구 전체사업
- 주요내용
 - 소통1번가 주민참여예산 -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
 - 예산낭비 신고 → 사업부서 검토, 결과 공유
- 업무 처리 절차



4-2 주요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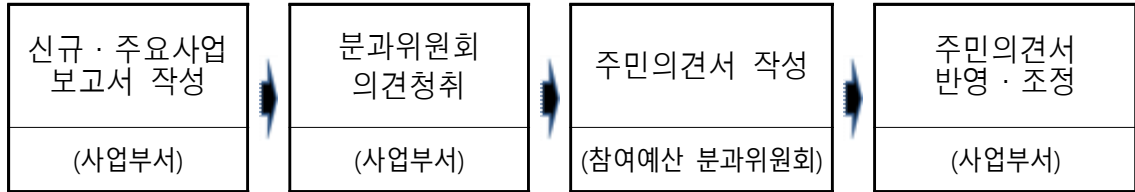
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

- 목 적 :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청취를 통해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공유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 강화
- 운영개요
 - 운영횟수 : 연1회
 - 운영시기 : 2023. 10월
 - 의견수렴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
 - 운영방법 : 2024~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실시
 - 운영주체 : 기획예산담당관

□ 2024년 주요·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

- 목 적 : 2024회계년도 주요·신규사업(2억 이상)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확대 및 강화
- 운영개요
 - 대상사업 : 2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
 - 운영시기 : 2023. 8~9월
 - 의견수렴 :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
 - 운영방법 : 분과위원회별 주요사업(신규 2억이상) 검토
- 의견수렴 방법
 - 전 부서 2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보고서 작성 제출
 -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설명
 - 분과별 사업설명 청취 후 의견제시 및 주민의견서 작성·제출
 - 제시된 의견은 부서에 통보하여 2024년 예산(안)에 반영·조정
 - 2024년 예산(안)에 주민의견서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

- 협조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※전 부서 2억이상 사업 파악
- 업무 처리 절차



5. 홍보 계획

다양한 채널 활용

- 소통1번가 내 주민참여예산 페이지 활용
 - 상시제안 접수창구 마련
 -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공개
 - 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
 - 설문조사, 주민투표 활용한 다양한 의견 수렴
- 구정소식지 및 서구소식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
- 주민참여예산 홍보물품(현수막, 포스터, 리플렛 등) 제작
- 지역행사 진행 시 홍보부스 운영
-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, LED 전광판, SNS, 유튜브 등 활용
- 서로e음 어플 팝업배너와 롤링배너 등을 통한 홍보

접근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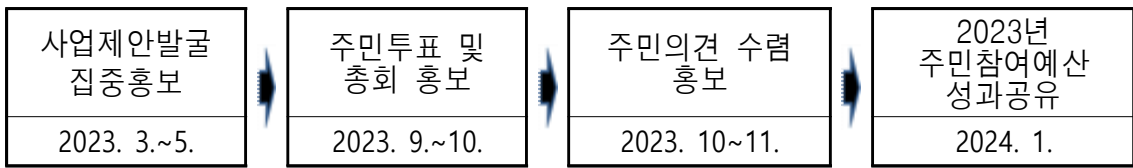
- 제작 홍보물에 QR코드 삽입
- 네이버 폼(비로그인) 등을 활용한 손쉬운 주민 제안사업 접수
-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리플렛 제작·배포
- 주민참여예산사업 표지판 부착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

맞춤형 홍보

- 연령별·대상별 맞춤형 사례를 넣은 홍보물 제작
- 아동·청소년 대상 참여예산 홍보영상 활용

단계별 홍보

- 추진 단계별 집중 홍보 추진



VI. 행정사항

부서	협조사항
공동체협치과	-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- 지원협의회 운영 - 민관협의회 운영
기획예산담당관	-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재정컨설팅 -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- 2024년 전 부서 2억이상 신규·주요사업 파악
동 행정복지센터	- 주민의견 수렴·접수 - 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지원 - 예산학교 운영 협조(주민 홍보 및 장소 제공) - 주민참여예산제 홍보
주민의견수렴 관련 부서	- 아동·청소년, 청년, 여성, 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및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하여 주민의견서 제출
기획예산담당관, 총무과, 복지정책과, 클린도시과, 경제정책과, 도로과	- 주민(분과)위원회 운영 - 2023년 진행 사업 관리카드 작성·취합

부서	협조사항
전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제안사업 검토서 작성 : 현장출장, 비교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자료 제출 -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협조 : 분기별 관리카드 제출,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조치 결과제출 - 주민숙원사업(다양한 경로의 주민제안사업) 제출 - 부서 신규·주요사업 관리카드 제출: 2억원 이상
정보화담당관 홍보정책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진행 협조(소통1번가 활용) - 주민제안사업 신청기간 등 홍보 : 구정소식지 및 서귀소식 문자알림 서비스

- 붙임 1. 관련 서식 각1부.
2. 관련 조례 1부.

붙임 1. 관련 서식

【서식 1】 주민제안사업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

주민제안사업 신청서
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자			
성명		연락처	
주소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 제안사업 내용			
사업명			
위치			
제안취지 및 사업내용			
소요예산(추정)			
산출내역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자 감리제 희망여부		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, 미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	
<input type="checkbox"/> 위치도 및 관련사진			
위치도		관련사진	

* 제안자감리제 : 제안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연락처, 주소	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	1년

※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23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민제안사업 검토서

관리번호		추진유형	
분과명		의견제출부서	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자			
성명		연락처	
주소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 제안사업 내용			
사업명			
위치			
제안취지 및 사업내용			
소요예산			
산출내역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자 감리제 희망여부		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, 미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	
<input type="checkbox"/> 위치도 및 관련사진			
위치도		관련사진	

□사업부서 검토결과					
실 소요예산	※ 반드시 작성				
의견청취	의견청취일자 : ※ 반드시 작성		수단 : 면담, 유선, 기타		
사업기간					
검토의견	<p>※ 적정 또는 부적정 등에 대한 사유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기재</p> <p>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성 : 주민참여예산 취지 및 효과고려 - 시급성 : 내년에 해야하는 시급한 사업인지.. - 공공성 :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약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- 효과성 : 사업근거 및 타당성 - 목표달성도 : 사업기간동안 목표달성 가능여부 - 수혜대상 :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 - 양성평등 고려 - 사업비 적정성 등 				
종합검토결과	2024년 예산반영 미반영	원안반영□, 수정/일부반영□ 법적 불가□, 기추진□, 장기계획□ 기타□ * 기타 사유 : _____ * 기추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경우 참여예산으로 반영 가능			
검토부서 (사업부서)	부서명			팀명	
	팀장	이름		담당자	이름
		전화번호			전화번호

【서식 3】 제안사업 심사평가표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평가표

□ 위원회명 : **분과위원회**

□ 사업명 :

□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: 총점(점)

※ 사전검토 : 심사기준상 주민참여예산 부적정사업에 해당시 심사평가 제외 대상임

항 목	평가 지표	배 점					점수
		←그렇지않다		매우그렇다 →			
		1	2	3	4	5	
효과성	주민들이 만족할 사업입니까?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입니까?						
타당성	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 공익목적에 적합한 사업입니까?						
사업비 적정성	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낭비요인 없이 적정합니까?						
수혜도	주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?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입니까?						
확산 가능성	사업효과가 장기간 지속됩니까? 구 전역에 걸쳐 적용가능합니까?						

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(서 명)

【서식 4】 : 주민의견서(결산, 예산편성방향, 신규 주요사업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

- 참여예산 분야 : ○○년도 결산
- 분과명 :
- 총괄의견

○

- 사업별 의견 (※ 필요시 작성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세부사업명	예산액	사업개요	의견내용	비고 (확대, 축소 등 기재)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
‘○○년도 결산’과 관련하여 _____분과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3. . .

_____분과위원장 성명 (서명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

- 참여예산 분야 : ○○년도 예산편성방향
- 분과명 :
- 의견내용

○

'○○년도 예산편성방향'과 관련하여 _____분과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3. . .

_____분과위원장 성명 (서명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

- 참여예산 분야 : ○○년도 신규 주요사업 (2억원 이상)
- 분과명 :
- 의견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세부사업명	예산액	사업개요	의견내용	비고 (증액, 감액 등 기재)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	(○○○과)		○기간: ○위치: ○내용:		

※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외

‘2024년도 신규 주요사업’과 관련하여 _____분과위원회의
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3. . .

_____분과위원장 성명 (서명)

【서식 5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

(분과명 :)

일 시				장 소		
참석상황	재적위원	참석	불참	(불참위원)		
안 건						
<p>○ 심의내용</p> <p>○ 의결사항</p> <p>○ 그 밖의 사항</p>						
서명	위원장		부위원장		간사	
	성명	서명	성명	서명	성명	서명

위 원	발 언

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서

(분과명 :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○○○○분과 2024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서를 붙임과 같이 결정 제출함.

2023년 월 일

붙 임 : 2024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목록 1부. 끝.

주민참여예산 위원회

○○○○ 분과위원회

분과위원장 : (서명)

간 사 : (서명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귀중

2024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목록

○○○○○ 분과위원회

(단위:천원)

순위	사 업 명	총사업비	비고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
【서식 7】 제안사업 구체화 서식

사 업 제 목

관리번호	2023-	분과명	○○분과			
제안자성명	○○○	소요예산 (백만원)	계	국비	시비	구비
사업기간	2023. . ~ 2023. .					
사업위치						
추진 필요성 (목적)	글씨체 (HY중고덕 13)					
사업 내용	글씨체 (HY중고덕 13)					
사업 추진 절차	글씨체 (HY중고덕 13)					

<p>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</p>	<p>글씨체 (HY중고덕 13)</p>	
<p>사업 효과</p>	<p>글씨체 (HY중고덕 13)</p>	
<p>숙의 과정 조 정 사 항</p>	<p>숙의과정 참석여부</p>	<p>- 분과위원회 참석(○회) - 분과위원회와 협치(○회) *협치 - 간담회, 워크숍, 현장방문 등 민관 협의 활동</p>
	<p>구체화 조정내용</p>	<p>글씨체 (HY중고덕 13)</p>

<p>○○○과 (부서명)</p>	<p>과 장</p>	<p>○ ○ ○</p>	<p>(☎560-0000)</p>
	<p>팀 장</p>	<p>○ ○ ○</p>	<p>(☎560-0000)</p>
	<p>담당자</p>	<p>○ ○ ○</p>	<p>(☎560-0000)</p>

【서식 8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

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

관리번호	분과명 -00
------	---------

기준일 : 2023. . .

사업명					
위원회명	00분과위원회	위원회 관리번호		제안자	김00
부서명	담당자	행정7급 임00	연락처	560-0000	
추진상황	시기	미도래	추진중	완료	추진율

개요

- 위 치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-
-

○ 소요예산

(단위:천원)

연 도	예 산	집 행 액	비 고

관련사진

사업시행 전	사업시행 후
사진(증·저 화질)	사진(증·저 화질)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[시행 2020. 12. 21.] [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25호, 2020. 12. 21., 일부개정]

인천광역시 서구(공동체협치과), 560-478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 5. 17, 2018. 12. 24)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(개정 2016. 5. 17)

1.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(개정 2016. 5. 17)
2. 관내 영업소,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② 이 조례에서 “동 단위 단체”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.(개정 2016. 5. 17)

제3조(기본이념)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.

제4조(법령준수 의무)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5. 17)

제6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[제목개정 2020. 12. 21.]

제7조(운영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.

③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제안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1.]

제8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,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20. 12. 21.]

제9조(의견 제출)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

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1.]

제10조(결과 공개)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1.]

제11조 <삭제 2020. 12. 21.>

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[제목개정 2020. 12. 21.]

제12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 5. 18., 2020. 12. 21.>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<개정 2020. 12. 21.>

2.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<개정 2020. 12. 21.>

3. 예산·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,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

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,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⑥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, 청소년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. <신설 2020. 12. 21.>

[제목개정 2020. 12. 21.]

제13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,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6. 5. 17, 2018. 12. 24, 2020. 5. 18.)

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

2.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
3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5. 주민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6.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. 다만,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14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)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1.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

2.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

3.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

4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 <개정 2020. 12. 21.>

5. 정치적·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.(개정 2016. 5. 17)

[제목개정 2020. 12. 21.]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,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제16조(기능)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1. 중기지방재정계획, 투·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
2.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
3.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,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<개정 2020. 12. 21.>
4.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
5.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
6.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
7.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<신설 2018. 12. 24.>
8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(중전 7에서 이동)

제17조(회의 개최)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③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제1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분과위원회는 단·실·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·실·국을 합하여 8개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.

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0. 12. 21.>

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,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[중전 제5호에서 이동 및 중전 제6호 삭제 <2020. 12. 21.>]

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6. 5. 17, 2020. 12. 21.)

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<신설 2020. 12. 21.>

⑨ 청년,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,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,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 <신설 2020. 12. 21.>

제19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제20조(회의록 공개)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, 심의안건,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제4장 참여예산 민관협의회

제21조(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(이하 “민관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, 부구청장, 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환경안전국장, 경제교통국장, 도시관리국장, 보건소장,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3. 08. 05, 2016. 03. 04, 2018. 12. 24, 2019. 11. 4., 2020. 12. 21.)

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(개정 2018. 12. 24)

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.(개정 2018. 12. 24, 2020. 12. 21.)

제22조(기능)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을 심의 <개정 2020. 12. 21.>
2.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,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·조정
3.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
4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3조 삭제 <2016. 5. 17.>

제2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,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5조(회의 개최)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참여예산 지원협의회<신설 2018. 12. 24.>

제26조(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(이하 “지원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개정 2020. 5. 18.>

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,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제27조(기능)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<개정 2020. 12. 21.>
2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<개정 2020. 12. 21.>
3.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
제2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5. 18.>

- 제29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, 지원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③ 간사는 지원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- 제30조(회의개최)**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.
 ② 지원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그 밖의 사항

제31조 <삭제 2020. 12. 21.>

- 제32조(예산학교 운영)**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,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.
 ② 예산학교는 상설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중전 제27조에서 이동]

[전문개정 2020. 12. 21.]

- 제33조(평가보고회 개최)**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.

[중전 제28조에서 이동]

- 제34조(재정 및 실무지원)**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1.>

② 구청장은 위원회, 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1.>

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게 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 5. 17, 2020. 12. 21.)

④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「강사료 지급기준」 및 「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」을 준용한다. <신설 2020. 12. 21.>

[중전 제29조에서 이동]

- 제3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30조에서 이동]

부칙(2011. 12. 13. 조례 제1129호)

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8. 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~②생략

③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문화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④~⑩생략

부칙(2016. 3. 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민관협의회는 구청장, 부구청장, 총무국장, 문화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보건소장,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"을 "민관협의회는 구청장, 부구청장, 총무국장, 문화복지국장, 경제환경국장, 도시관리국장, 보건소장,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"으로 한다.

②~⑦ 생략

부칙(2016. 5. 17 조례 제138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24 조례 제161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1. 4.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 생략

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, 복지문화국장, 경제환경국장, 도시관리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환경안전국장, 경제교통국장, 도시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③부터 <35>까지 생략

부칙(2020. 5. 18. 조례 제175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2.21조례 제1825호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회의 구성원이 된다.